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3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3월 16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3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3.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기관 등록 업무 이양에 따른 기관명 변경(안 제2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의2, 안 제14조)
-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호선에서 당연직으로 변경(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상위법 개정(시행. 2021.1.1.)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항임.
 - 안 제6조(협회의의 구성 및 임기)는 의료관광협회의의 위원장을 현행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에서 부구청장이 하도록 명시함.
 - 안 제2조(정의), 안 제10조의2(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및 안 제1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변경한 조항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의료관광협회의의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의료관광협회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을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6 호
----------	---------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기관 등록 업무 이양에 따른 기관명 변경(안 제2조제3호·제4호)
-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조제4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
- 다.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호선에서 당연직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2. 2. ~ 2. 2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치업자(이하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이하 “유치사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유치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u>보건복지부장관</u>에게 등록된 의료기관을 말한다.</p> <p>4. “외국인환자 <u>유치업자</u>(이하 “유치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u>보건복지부장관</u>에게 등록된 자를 말한다.</p> <p>5.·6. (생략)</p> <p>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u>위원장</u>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10조의2(의료관광 안내센터의</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 ----- ----- ----- <u>서울</u> <u>특별시장</u>----- -----.</p> <p>4. ----- <u>유치사업자</u>(이하 “유치사업자”----- ----- ----- ----- ----- <u>서울특별시장</u>----- -----.</p> <p>5.·6. (현행과 같음)</p> <p>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u> -----.</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의료관광 안내센터의</p>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 의료·보건·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설치·운영) ① -----
----- 유치사업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

----- 유치사업자-----

-----.

1. ~ 5. (현행과 같음)